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안 번호	21-148
----------	--------

제안연월일 : 2021. 12. 3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복무선서(안 제2조)
- 다. 책임완수, 근무기강의 확립, 비밀엄수, 친절·공정, 근검절약  
(안 제3조~제6조)
- 라. 당직 및 비상근무, 파견근무, 겸임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복장 및 제복  
(안 제7조~제11조)
- 마.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  
(안 제12조~제14조)
- 바. 국외여행(안 제15조)
- 사. 휴가기간의 초과(안 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3조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없음
- 다. 입법예고:
- 다. 조례안: 붙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등의 당직 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

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

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및 제복) ①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다.

## 제2장 휴가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

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활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 ③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④ 의장은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연간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 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에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와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면직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의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는 3시간 이상으로 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선서문 (제2조제1항 관련)

###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제2조제2항관련)

###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의정팀장이 담당한다.

[별표 2]

###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 관련)

대 인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li> <li>○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li> <li>○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li> <li>○ 품위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li> <li>○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li> <li>○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 부담 없도록 처리한다.</li> <li>○ 주민의 존경과 신리를 받도록 처신한다.</li> <li>○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li> <li>○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li> <li>○ 반사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을 엄수한다.</li> <li>○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li> <li>○ 근검, 절약한다.</li> <li>○ 남에게 겸손한다.</li> <li>○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li> <li>○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li> <li>○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li> <li>○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li> <li>○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li> </ul>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4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2조 관련)

1.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가.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

##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